

## 국립생태원 공고 제2023 - 158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국립생태원장

###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월평·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구분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안)	
대전 (갑천)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월평·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유성 367103	1·2·3등급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 지정*
용인 (운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산10-3 일대	좌향 377141	1·2등급	1·2등급	식생

\*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1:25,000)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홈페이지(<http://www.nie.re.kr>)에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토요일 포함) 공개합니다.

##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내(토요일 포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생태원장(참조 : 생태조사연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공문(전자문서)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6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장  
(참조 : 생태조사연구실장)에게 의견 제출

※ 문의 : 국립생태원 생태조사연구실(041-950-5672, 5680, 5111, 5682)